

자원에 새 생명을! 환경에 새 희망을!



한국환경공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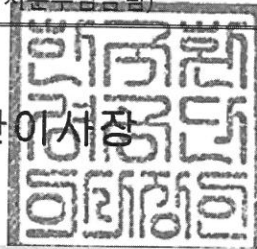
수신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
(경유)

제 목 폐기물처분부담금 정기신고 대상안내

1. 「자원순환기본법」 제21조(폐기물처분부담금) 및 제29조(보고 및 검사 등) 관련입니다.
2. 「자원순환기본법」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소각·매립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신고·납부하여야 합니다.
3. 귀 사의 2018년도 폐기물 전자인계 자료를 검토한 결과, 사업장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한 내역이 존재하여 정기신고 대상사업자로 확인되었기에 제도안내문을 보내 드리니 소각·매립 처분량 실적을 기한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신고기한 : 2019. 1. 1. ~ 2019. 3. 31.까지	
○ 신고방법 : 서면 또는 폐기물처분부담금 홈페이지(www.budamgum.or.kr)에서 신고	
※ 3월은 온라인 회원가입 및 신고 집중기간으로 원활한 신고를 위하여 회원가입을 미리하시기 바랍니다.	
※ 기한 내 미신고 시 : 「자원순환기본법」제36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	
○ 신고서류	
구분	서류명
기본서류	-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 (서면신고 하는 경우)
증빙자료	- 폐기물 유형 및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소각·매립 처분량을 증명하는 자료
	-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증명서 (또는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) -
	- (위탁 처분) 폐기물 위·수탁처리계약서 / (스스로 처분) 폐기물처분시설 설치승인서
추가서류	- (해당자만 제출)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서 (서면신고 하는 경우)
○ 문의처 : 032-590-5093 (한국환경공단 폐기물처분부담금팀)	

한국환경공단이사장



★대리 박성환 팀장 이민복 처장 12/20 최성수

협조자

시행 폐기물처분부담금팀-2500 (2018.12.20.) 접수

우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(중합환경연구단지 내)
전화 032-590-5093 /전송 032-590-4088 /

()
/ <http://www.keco.or.kr>
/ 공개

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요약 안내문

■ 신고대상

- 사업장 내 발생하는 폐기물 중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그 중량을 신고하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
- ※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도 배출자가 신고·납부의 대상입니다.

■ 비신고 대상

- 발생폐기물을 소각·매립이 아닌 다른 방법(재활용 및 파·분쇄 등)으로만 처리할 경우
- 재활용금지대상폐기물(폐석면, 의료폐기물, 폐농약 등)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
- ※ 세부 재활용금지대상폐기물은 안내문 첫 페이지 하단 참조

■ 신고일자

-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 : 최초신고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신고(2018년 발생량)

■ 신고방법

- : 폐기물처분부담금 시스템(www.budamgum.or.kr)에 회원가입(인증서 등록) 후 신고
- ※ 세부 신고방법은 시스템 내 교육자료 중 '폐기물처분부담금시스템 매뉴얼' 참조

■ 부과금액 산정

$$\text{폐기물 처분량(kg)} \times \text{부과요율(원/kg)} \times \text{산정지수}$$

- ※ 폐기물 처분량 :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소각·매립한 폐기물의 중량
- ※ 부과요율은 안내문 3페이지 참조
- ※ 산정지수는 최초의 적용연도를 1로 한다.

■ Q&A

- Q. 폐기물처리비용을 지불하며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. 납부의무자(신고대상)는 누구인가요?
- A. 납부의무자는 「폐기물관리법」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며, 자가 또는 위탁처리와 상관없이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납부의무자입니다.
- Q. 발생폐기물의 처리방법이 소각이나 매립이 아닌 '파쇄·분쇄'입니다. 신고대상인가요?
- A. 파쇄·분쇄는 중간처분이므로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대상이 아닙니다. 다만, '파쇄·분쇄' 등 중간처분 후 발생하는 잔재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경우 신고대상입니다.
- Q. 지정폐기물만 배출하는 사업장입니다. 100% 감면이면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?
- A. 감면대상폐기물도 신고를 하여야합니다. 또한 신고 시 감면신청(증빙서류 포함)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Q. 폐석면을 위탁으로 매립하여 처분하였습니다. 신고대상인가요?
- A. 폐석면은 「폐기물관리법」에서 명시한 재활용이 금지된 폐기물입니다. 재활용이 금지된 폐기물은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대상 폐기물이 아닙니다.(비신고 대상 참조)

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안내문

[시행일 : 2018년 1월 1일]

■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란?

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고자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·징수하는 제도입니다.

■ 부과대상

부과 대상	납부의무자	부과·징수기관
사업장폐기물*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(위탁 및 자가 처리 모두 대상)	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**	한국환경공단

* 사업장폐기물: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, 사업장생활계폐기물, 건설폐기물, 지정폐기물

** 사업장폐기물배출자: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,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필증 및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증명서 등을 받은 자 등

-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의 소각 또는 매립처분에 대하여 부과됩니다.

<비신고 대상>

-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이 아닌 방법(예 : 재활용, 파쇄 등) 만으로 처리할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닙니다.
-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재활용이 금지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경우에는 부과대상이 아닙니다.(「폐기물관리법」 제13조의2 및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4조의3제2항1호)

[재활용이 금지된 폐기물]

- ① 폐석면
- ②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(PCBs)을 다음 농도 이상 함유하는 폐기물
가. 액체상태의 것(1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)
나. 액체상태 외의 것(용출액 1리터당 0.003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)
- ③ 의료폐기물(태반은 제외한다)
- ④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7조제1항에 따라 제조 등이 금지된 물질 중 폐기되는 물질
- ⑤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에 따라 금지물질로 지정·고시된 물질 중 폐기되는 물질
- ⑥ 폐농약(「농약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폐기되는 것을 말한다)
- ⑦ 폐의약품(「약사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중 폐기되는 것을 말한다)
- ⑧ 의료폐기물을 멸균·분쇄한 잔재물
- ⑨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재활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폐기물

■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

- 대상업체 :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 (「자원순환기본법」 시행령 제19조)
- 신고일자 : 매년 3월 31일까지 신고 (첫 신고일: '19년 3월 31일까지)
- 신고서류 (서면 또는 폐기물처분부담금 홈페이지에서 신고)

구분	서류명
기본서류	-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 (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)
증빙자료	- 폐기물의 유형 및 전년도의 폐기물 종류별 소각·매립 처분량을 증명하는 자료 -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(또는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) -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(위탁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만 제출) - 폐기물처분시설 설치승인서(스스로 처분하는 경우에만 제출)
추가서류 (해당자만 제출)	-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서 (시행규칙 별지 제13~14호서식)

※ 감면신청서에 대한 증빙자료는 「자원순환기본법」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참조

- 신고절차



■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

$$\text{폐기물 처분량(kg)} \times \text{부과요율(원/kg)} \times \text{산정지수}$$

※ 폐기물 처분량 : 전년도의 종류별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소각·매립한 양

-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요율

폐기물 유형		요율	
		매립하는 경우	소각하는 경우
사업장폐기물	불연성	kg당 10원	-
	가연성	kg당 25원	kg당 10원
건설폐기물		kg당 30원	kg당 10원

※ 사업장폐기물 가·불연성의 분류는 「자원순환기본법」 시행령 별표6 참조

- “산정지수”는 최초의 적용연도를 1로 하고,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에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값

■ 감면기준

감면 대상	감면 내용	감면율(%)
자가 매립 후 재활용	· 매립한 연도의 12월31일까지 재활용	100
	· 매립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1일부터 2년 이내에 재활용	50
소각열에너지 회수	· 소각열에너지를 75% 이상 회수하여 이용	75
	· 소각열에너지를 60% 이상 75% 미만 회수하여 이용	60
	· 소각열에너지를 50% 이상 60% 미만 회수하여 이용	50
폐기물부담금 납부	· 제품·재료·용기에 대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해당 제품·재료·용기를 처분하는 경우	100
중소기업	·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	100
	·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경우	50
지정폐기물	· 지정폐기물 처분	100
도서지역 폐기물	· 도서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당 도서 내에서 처분	100
재난폐기물	· 재난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처분	100
매립시설 정비폐기물	·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용종료(예정) 매립시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분	100

- 중소기업 중 다음의 사업자는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의 연간 합계가 300톤 미만인 경우로 한정
 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
 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
 -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
 - 「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을 등록한 자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폐가스류처리업을 등록한 자
- 감면기준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해당 기준 중 감면비율이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

■ 신고 및 자료제출 : www.budamgum.or.kr [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홈페이지]

■ 문의전화 :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처분부담금팀, 032-590-5093

〈폐기물처분부담금 온라인 신고방법〉

폐기물처분부담금 홈페이지 : www.budamgum.or.kr (초기화면에서 오른쪽 아이콘 클릭)

※ 온라인 신고 세부절차는 홈페이지의 교육자료 메뉴에 게시된 '폐기물처분부담금 시스템 매뉴얼' 참조

■ 온라인 신고절차



1. 첨부서류 준비

<단계별 첨부서류 목록>

회원가입	공인인증서 등록	신고서 등 제출
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, 폐기물처리계획확인증명서(지정 폐기물일 경우)	① 공인인증서 파일 ② 재직확인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(별도서식, 개인 인증서 등록 시)	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증빙자료 참조(p.3)

2. 회원가입

- ①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클릭
- ② 회원가입하는 사용자 본인의 휴대폰 SMS 또는 아이핀 인증
- ③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여부 확인 후 약관 동의 및 회원가입 클릭
*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대신 개인회원 체크
- ④ 회원정보(사업자, 사용자, 사업장 정보 등) 입력 및 파일 첨부 후 제출
*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(2자리) 기준으로 입력
- ⑤ 공단 시스템 관리자가 회원가입 승인 후 문자발송

3. 공인인증서 등록

- ① ID 로그인 후 상단 '사용자정보' → '인증서등록' 메뉴 클릭
- ② 등록할 공인인증서 종류 확인

개인 인증서 등록 시	사업자 범용 인증서 등록 시
③ '첨부파일 양식다운로드' 클릭 ④ 재직확인서,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⑤ 공인인증서 파일 등록, 제출서류 첨부 ⑥ 관리자승인 후 사용 가능	③ '인증서등록' 클릭 ④ 공인인증서 파일 등록 ⑤ 관리자승인 없이 바로 사용 가능

4. 신고서 등 제출(수시신고)

- ① 반드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처분부담금신고→정기신고 메뉴 클릭
- ② 신규작성 클릭 후 처분년도, 신고하려는 사업장 선택
- ③ 폐기물 종류 및 분류번호 조회·적용
- ④ 폐기물 유형, 자가/위탁, 처리방법, 처분량, 감면신청(해당자에 한함) 등 입력 후 저장
- ⑤ 해당되는 첨부서류 추가 후 실적입력 클릭
- ⑥ 예상부담금 내역 확인 후 제출버튼 클릭
- ⑦ 30일 이내 담당자 확인 및 고지서 발송